

미국반덤핑법의 적용에 관한 사례연구

Case Study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U.S. Antidumping Law

하충룡(Choong-Lyong Ha)

부산대학교 무역·국제학부 부교수

한나희(Na-Hee Han)

부산대학교 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후 연구생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론 |
| II. 미국반덤핑법의 운영과 적용 | 참고문헌 |
| III. Eurodif S.A. v. United States | Abstract |

Abstract

The Title 19 of the U.S. Code covers custom duties and is the heart of international trade regulation in the U.S.. Among the provisions in Title 19, is Chapter 4, the Tariff Act of 1930. Under U.S. Antidumping duty law, dumping occurs when 'subject merchandise' is imported into the U.S. and sold at less than 'fair value.' The administration of U.S. Antidumping duty law is shared between the Department of Commerce('Commerce') and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USITC'). The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 and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 decided the review of antidumping duty ("AD") determinations and administrative review results issued by the Commerce and the USITC, as well as the review of countervailing duty ("CVD") decisions.

In Eurodif S.A. v. United States, the CAFC considered the important issue of whether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apply to sales and purchases of services--in this case, the sale or purchase of enrichment services. Although the federal courts had considered the issue of whether a sale of enrichment services constitutes a sale of goods, the issue had never arisen in the context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Also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Supreme Court has ever agreed to consider an antidumping case.

Key Words : U.S. Antidumping, AD Investigation proces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 the Supreme Court

I.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무역구제분야와 관련하여 '08년 2월 말 기준 20개국으로부터 조사 중인 23건을 포함하여 총 113건이 규제 중이다. 국가별로는 중국·미국·인도 3국이 55.7%를 점유하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화학·철강이 전체의 65.4%를 차지하고, 화학은 중국·인도(68.9%), 철강은 미국(41.3%)이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 101건, 반덤핑/상계관세 공동 4건, 상계 관세 3건, 셰이프가드 5건으로 반덤핑이 규제의 대부분(89.4%) 차지하고 있다.¹⁾ 그러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체결에서 양국의 비준만 남아 있는 현재 상황에서, 무역구제분야 중 대표적 분야인 반덤핑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통상정책 및 집행은 비록 미국 국내법에 근거한 것이지만, 그 국제적 영향력은 상당하다.²⁾ 특히 반덤핑 규제 등에 있어 미국의 태도는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인 비난을 받아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사법통제가 문제시 되고 있다.³⁾ 이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과의 교역이 활발한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반덤핑에 대한 연구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⁴⁾ 또한 미국이 주로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반덤핑조치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역 규모가 크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라 볼 수 있지만⁵⁾ 미국의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선 막대한 손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방안 등의 연구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⁶⁾

- 1) 지식경제부, “무역구제 포커스 제13호”, 2008, p.48. www.mke.go.kr 참조.; WTO 통계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무역구제조치는 반덤핑제도이다. 또한 반덤핑조사개시 건수는 지속적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1995년부터 200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수입품에 대해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거나 반덤핑 조치를 취한 국가는 인도로 나타났고 그 뒤를 미국이 따르고 있다. 무역투자연구원, 「각국 무역구제제도의 현재와 미래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산업자원부, 2007. 7, pp.23-25.
- 2)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세계무역통계를 보면 최대 수출국은 독일에 이어 미국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입을 살펴보면 미국이 1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의 통상정책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수밖에 없다. <http://stat.kita.net> 참조.
- 3) 김기영, “통상의 국내적 규제와 사법심사 -미국국제무역법원의 반덤핑관할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관할권문제의 성격과 의의.” 「기업법연구」, 제19권 제4호, 한국기업법학회, 2005. 12, p.74.
- 4)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한국무역의 “최근의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과의 교역이 이전에 비하여 줄어들긴 하였으나, 여전히 중국에 이은 두 번째 교역국으로 우리나라와 활발한 교역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교역에 있어 수입보다는 수출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의 통상정책에 민감하다 할 것이다. <http://stat.kita.net> 참조.

(2008년 07월, 단위: 백만불, %)

국가	수출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총계	41,093	36.0	43,029	47.2
중국	8,983	30.4	7,445	44.1
미국	4,158	9.6	3,737	19.9
일본	2,647	23.8	5,674	30.2

- 5) 무역투자연구원, 전제서, pp.38-39.
- 6) 유기석, “한국기업이 유념하여야 할 미국 반덤핑이슈에 대한 고찰”, 무역위원회, 2007. 4, p.1. <http://kfc.go.kr> 참조. 실제 한국무역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한미 양국간 교역에 있어 대미수출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반덤핑 규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 무역규제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덤핑”은 불공정 무역관행의 하나로, 수입국에서 특정상품이 수출국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행위를 말한다.⁷⁾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덤핑을 국가 간 가격차별이라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미국관세법에서도 덤핑을 특정 종류의 외국상품이 미국 내에서 공정가격 미만으로 판매되거나 판매될 가능성으로 정의하고 있다.⁸⁾ 즉, 미국의 반덤핑법은 불공정한 외국의 경쟁자에 의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반덤핑법에 의거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1) 상무부가⁹⁾ 동종의 외국상품이 “공정가격(fair value)”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거나 판매될 것이라고 판정; (2) 당해 상품의 수입 또는 수입을 위한 상품의 판매(또는 판매될 것)에 의해 미국의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위협”에 처해 있거나, 또는 미국 “산업의 형성이 실질적으로 저해”된다고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USITC)가 판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¹⁰⁾

이와 같이, 미국의 반덤핑관세부과 여부는 일원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¹¹⁾ 달리 이원론적 입장으로 두 기관인 상무부와 USITC의 개별적인 판정을 요하고 있다.¹²⁾ 만약 양 기관의 최종 판정이 긍정적이라면, 상무부는 상품에 대한 덤핑마진과 동일한 금액으로 미국관세 및 국경보호청에¹³⁾ 직접 반덤핑관세부과명령을 한다.¹⁴⁾ 이후 이해관계자는¹⁵⁾ 최종 반덤핑관세부과 판정에 대하여 국제통상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CIT)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¹⁶⁾

최근 미국 내에서 반덤핑법 역사상 단 한 번도 제기되지 않았던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하였다.¹⁷⁾ 이에 판례법국가인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이후의 반덤핑법 적용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7) Restatement Third of the Foreign Relations Law of the United States § 806 cmt. a (1987), *REST 3d FOREL s 806*, “dumping is a practice by an exporter itself to sell a product abroad for lower prices than are charged in the domestic market.”

8) 19 U.S.C. §§ 1673(1) and 1677(34), 우리나라 관세법 제51조에서도 “덤핑을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9) 상무부에서는 산하기관인 국제통상관리실(ITA :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이 실질적인 반덤핑조치 운영 책임을 지고 있다.

10) 19 U.S.C. § 1673.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ies.

11) 무역구제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지식경제부의 준사법적행정기관인 무역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www.ktc.go.kr 참조.

12) Parr Rosson and Flynn Adcock, “A Primer on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Petitions”, *Center for North American Studies CNAS 2000-1*, January 2000, pp.2-3.

13) United State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14) 19 U.S.C. §§ 1673d(c)(2) and 1673e(a)(1).

15) 19 U.S.C. § 1677(9)에 의거하여, 이해관계자는 조사대상상품의 수입자나 외국생산자, 동종상품의 국내생산자 혹은 전체판매자, 당해산업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단체 등을 일컫는다.

16) 19 U.S.C. § 1516a(a)(2) and 28 U.S.C. § 1581(c).

17) Stuart M. Rosen and Gregory Husisian, “Judicial Review by the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and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under 19 U.S.C. § 1581(C)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s issued by the Department of Commerce”,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38 *GEQJIL* 39, Fall 2006, p. 45.; Eurodif S.A. v. United States, 411 F. 3d 1355, 423 F. 3d 1275, and 442 F. Supp. 2d 1367. 해당 사례들의 쟁점은 농축우라늄의 공급 재료가 반덤핑법 19 U.S.C. § 1673에 의거할 수 있는 유효한 청원인지에 대한 것이다. 즉, 후술하겠지만 저농축우라늄 관련계약이 서비스계약인지 혹은 상품계약인지 여부이다. 당해 쟁점이 중요한 이유는 반덤핑법령이 상품계약에만 적용되므로, 반덤핑법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지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해당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한·미 양국 간의 교역에 있어서 넓게는 무역구제제도, 좁게는 반덤핑법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국반덤핑법의 최근 판례의 적용과 관련하여, 제II장에서는 미국 내에서 반덤핑 관세부과절차가 운용되고 있는 절차적·실체적 요건 및 반덤핑관세부과 명령 이후 당사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CIT와 연방항소순회법원에서의 반덤핑 사례의 운용과 지금까지 반덤핑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정립된 기준을 살펴 살펴볼 것이다. 제III장 연방대법원에서 처음 다루는 *Eurodif S.A. v. US* 사례를 살펴보고, 최근 CIT 및 연방항소순회법의 입장과 더불어 연방대법원에서의 반덤핑법 해석에 대한 판결경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IV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이후의 반덤핑사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함의에 대하여 연구할 것이다.

II. 미국반덤핑법의 운영과 적용

이번 장에서 다루게 될 내용은 미국반덤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 측면으로서 해당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핀 후, 각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CIT 및 연방항소순회법원의 항소와 관련한 판할구조를 간략히 언급하기로 한다. 또한 본 논문의 핵심으로 미국반덤핑법을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일반론을 살펴볼 것이다.

1. 미국반덤핑법의 운영

1) 상무부 및 USITC의 반덤핑 조사절차

미국 성문법전 제19편은 관세와 관련된 규정을 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국제통상 분야를 규율하는 핵심으로, 제19편은 1930년 관세법 제4장을 일컫는다.¹⁸⁾ 동 법은 덤핑을 포함하여 미국 국경을 가로지르는 불공정무역을 규제하기 위한 의미로 제정되었다.¹⁹⁾ 미국 내에서 무역구제 관련법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이 있으며, 양법은 절차적인 면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면에서 유사하다.²⁰⁾ 현행 미국 반덤핑법은 미국 내에 덤핑된 상품의 관세부과 절차 및 실체규정에 대하여 정

18) 19 U.S.C. §§ 1001-1681.

19) 19 U.S.C. §§ 1671-1677.

20) Committee on Ways and Means U.S. House of Representatives, *OVERVIEW AND COMPILATION OF U.S. TRADE STATUTES Part II*,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June 2005, p.96.;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들은 미국의 반덤핑법상 실체적 규정상의 여러 불합리한 사항 또는 투명상의 결여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적을 해 왔다. 그 결과 우루과이라운드 이행법(URAA)에서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으나 아직도 자의적 해석과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이 산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윤충원,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 김문당, 2006.11, p.524.

하고 있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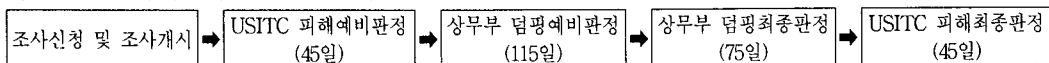
미국반덤핑 절차는 1)조사단계, 2)관세사정단계, 3)철회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체 절차에서 반덤핑절차의 요체는 조사단계라고 할 수 있기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반덤핑법의 조사절차를 살펴 볼 것이다. 반덤핑관세 부과를 위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반덤핑조사 절차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²²⁾

첫째, 조사신청 및 조사개시 단계이다. 미국 내 상품의 생산자 및 산업은 미국 내에서 어떠한 상품이 공정가격²³⁾ 미만으로 판매되고, 그러한 상품이 미국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 및 산업 확립의 지연에 기인 혹은 위협하는 경우에 조사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²⁴⁾ 이해관계자는 상무부와 USITC에 동시에²⁵⁾ 조사개시 신청을 제출하거나,²⁶⁾ 혹은 상무부의 직권으로 조사개시를 할 수 있다.²⁷⁾ 대체로 특정상품을 생산하는 미국의 국내산업이 당해상품에 대한 조사신청을 하는데서 시작된다. 조사신청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내에²⁸⁾, 상무부는 조사신청이 관세부과를 위해 필요한 주장인지와 동 주장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정보를 포함하는지를 검토한 후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²⁹⁾ 만약 판정이 긍정적이라면 덤핑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개시를 하고, 만약 판정이 부정적이라면 조사신청은 기각되고 절차는 종결된다.³⁰⁾

둘째, USITC의 피해예비판정 단계이다. 조사신청 제출일 부터 45일 이내에, USITC의 피해예비판정의 법적 기준은 입수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했을 때 조사대상 품목의 수입으로 인하여 미국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는지, 혹은 미국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체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징후를 결정하는 것이다.³¹⁾ 산업피해의 합리적인 징후를 판단하는 기준은 높은 피해기준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피해 가능성을 나타내 주는 사실을 찾을 수 있는 “단순한 가능성”보다 조금 높은 기준일 뿐이다.³²⁾ USITC에 예비판정이 신청되면 양 당사자는 요약본을 제출해야하고, 필요

21) 19 U.S.C. § 1673.

22) 미국 반덤핑법의 조사절차를 간략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3) 공정가격(fair value)은 미국 반덤핑법상 덤핑의 결정에 있어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지만, 동 법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다만, 실무상 공정가격은 대체로 수출자의 국내시장에서 당해 상품에 대해 책정된 가격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상가격(normal value)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고준성 외, 「미국통상법 연구」, 법무부, 1996, p.300.

24) 19 C.F.R. § 351.201.

25) 일반적으로 같은 날(same day)을 말한다.

26) USITC,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Handbook*,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Publication 3916, April 2007, p. II-4.

27) 19. C.F.R. § 351.201.

28) 19 C.F.R. 351.203(b). 혹은 상무부는 예외적인 상황에 있어서 조사신청일 부터 40일간 조사개시결정을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9) 19 U.S.C §1673a(c)

30) 19 C.F.R. 207.18, 19C.F.R. 207.40, and 19 C.F.R 351.207(d).

31) 19 U.S.C. § 1673(2).

32) DOC, *Antidumping Manual Chapter 16*, ITA, January 22, 1998, p.5.

한 경우 USITC는 청문회를 개최한다.³³⁾ 결국, 상무부와 USITC는 주장된 덤핑이 미국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쳤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인데, USITC는 덤핑된 상품을 “이유로” 피해가 발생했음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³⁴⁾

셋째, 상무부의 덤핑예비판정 단계이다. 상무부는 USITC의 예비판정이 긍정적인 경우 상무부가 조사 개시를 한지 140일 이내(USITC가 피해예비판정을 내린 후 115일 이내) 덤핑예비판정을 내린다.³⁵⁾ 반덤핑관세부와 절차에서 상무부의 주요 역할은 외국상품이 미국 내에서 공정가격 미만으로 판매되고 있거나, 판매될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다.³⁶⁾ 즉, 상무부는 또한 당해제품이 미국으로 덤핑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덤핑되었다면 상무부는 수출국에서 소비를 위하여 판매된 가격을 근거로 정상가격을 평가한다.³⁷⁾ 정상가격의 결정은 덤핑마진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즉, 덤핑마진은 미국 내에서 판매된 가격과 정상가격 간의 차이이다.³⁸⁾ 이후 상무부는 적절한 관세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덤핑마진을 이용할 수 있다.³⁹⁾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무부의 덤핑예비판정의 경우에는 판정이 부정적으로 내려지더라도 상무부의 최종판정까지 반덤핑조사는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다.⁴⁰⁾

넷째, 상무부의 덤핑최종판정 단계이다. 상무부의 덤핑예비판정 이후 75일 이내 덤핑최종판정을 하여야 한다.⁴¹⁾ 이 기간 동안, 상무부는 개별 수출업자에 대한 덤핑마진을 산출하고 난 다음 주장된 덤핑조사대상상품 마다 보증금을 징수한다.⁴²⁾ 마지막으로, 상무부는 모든 행정절차에 오류를 정정하고 최종판정을 공포한다.⁴³⁾ 그리고 만약 예비판정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제조사가 최종판정의 연기요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판정은 60일까지 연기될 수 있다.⁴⁴⁾ 또한 예비판정의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조사대상 품목의 수출 중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피제조사가 연기요청을 할 수 있다.⁴⁵⁾

마지막 단계는 USITC의 피해최종판정이다. USITC는 상무부의 덤핑예비판정 이후 120일 이내 혹은 상무부의 긍정적 덤핑최종판정 이후 45일 이내 피해최종판정을 하여야 한다.⁴⁶⁾ 상무부가 긍정판정을 하고 난 이후 USITC는 조사된 수입이 반덤핑관세명령의 구제효과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지 여

33) 19 C.F.R. § 207.15.

34) 19 U.S.C. § 1673d(b)(1)(B).

35) 19 C.F.R. §§ 351.205(b) and (e).

36) 19 U.S.C. § 1673(1).

37) 19 U.S.C. § 1677(b).

38) 19 U.S.C. § 1673(1)(B).

39) 19 U.S.C. § 1673e.

40) 유지열, 「미국의 반덤핑법과 실제」, 다산출판사, 2002, p.30.

41) 19 C.F.R. §§ 351.210. 최종판정은 60일의 기간을 더 항유할 수 있으므로, 상무부의 예비판정이 후 135일 이내에는 최종판정을 내려야 하며, 최종판정의 연기요청은 최종판정 예정일 이전에 할 수 있다.

42) 19 U.S.C. § 1673d(c)(1)(B).

43) 19 U.S.C. §§ 1673d(d) and (e).

44) 19 C.F.R. § 3510.210(b)(2).

45) 해당 연기요청에 대하여 상무부는 강력한(compelling) 이유가 없는 한 연기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19 C.F.R. § 351.210(e)(1).

46) 19 U.S.C. § 1673d(a).

부를 결정해야 한다.⁴⁷⁾ 또한 이 시기에 상품의 시기조절 및 수량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⁴⁸⁾

USITC와 상무부, 양 기관에서 당해덤핑에 대한 긍정적인 판정을 하는 경우, 관세는 덤핑마진과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되며, 미국의 세관업무 담당기관인 통관 및 국경보호청은 상무부로부터 반덤핑 명령을 받는 즉시 동 명령을 집행한다.⁴⁹⁾

2) CIT 및 연방항소소회법원의 반덤핑법 관할

미국의 관할구조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연방국가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매우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덤핑법 운용과 관련한 미국의 관할구조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상무부 및 USITC의 반덤핑법 운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명령을 판정하는 연방기관은 상무부와 USITC 즉, 이원론적 시스템으로 양분화 되어있다.⁵⁰⁾ 양 기관에서의 반덤핑판정이 종료되고 나면,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인 이해관계자는 상무부 및 USITC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CIT에 상소한다.⁵¹⁾ 이후 CIT에서 상소에 대한 “최종판결”을 하고나면, 패소당사자는 연방항소소회법원⁵²⁾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⁵³⁾ 여기에서의 판결은 CIT가 본안에 대한 소송을 끝내고 판결의 집행만을 남게 되었을 때 비로소 “중국적”이라는 지적이 있다.⁵⁴⁾ 뿐만 아니라 미 의회는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법령과 수입거래에서 발생하는 민사소송의 사법적 재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형성을 위해 CIT의 관할권 강화를 명시하고 있으나,⁵⁵⁾ CIT의 관할권은 불명확하고 논란이 많아 보인다.⁵⁶⁾

47) 19 U.S.C. § 1673d(b)(4)(A)(i).

48) 19 U.S.C. § 1673d(b)(4)(A)(ii).

49) 19 U.S.C. § 1673.

50) Parr Rosson and Flynn Adcock, *op. cit.*, pp.2-3.;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식경제부의 무역위원회에서 일임하는 이원론적 시스템이다.

51) 19 U.S.C. §§ 1516a(1)-(2); 28 U.S.C. § 1581(c)에 의거하여, CIT는 19 U.S.C. § 1516a(a)에서 개시되는 민사소송(civil action)에 대한 배타적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또한 CIT에 이의제기를 하는 원고는 USITC의 반덤핑 조사단계에서 부정적 예비 피해판정, 반덤핑조사단계에서 최종피해판정(부정 혹은 확정) 및 일몰제시에서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한다. 또한 기타 USITC의 결정에 대하여 CIT에 항소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USITC의 변화된 상황에 대한 재고에서 최종판정과 반덤핑조사에서 유보함에 대한 피해효과 판정 등이 있다.

52) *Federal Courts Improvement Act of 1982*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 *Pub. L. No. 97-164, 96 Stat. 25*. 해당법원에서 다루는 사례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a. 연방지적재산권법과 관련한 판정의 항소, b. 연방소청심사법원 및 지방법원의 모든 항소, c. 연방기관의 위원회에 대한 항소, d. 연방고용중재기구의 상소, e. 재향군인관할법원의 판정에 대한 항소, f. CIT 판정에 대한 항소, g. 경제적 긴급성 및 에너지정책과 관련한 판정에 대한 항소.

53) 28 U.S.C. § 1295(a)(5).

54) *Cabot Corp. v. United States*, 788 F.2d 1539, 4 Fed. Cir. (T)80, Appeal No. 86-729, April 9 1986, p.1539.; *McLean v. Department of Treasury*, 2007 WL 4125032, *1 (Fed.Cir. Nov 05, 2007) (Table, text in WESTLAW, NO. 2007-3291), p.1.; *Hyatt v. Dudas*, 492 F.3d 1365, 1368, 83 U.S.P.Q.2d 1373, 1373 (Fed.Cir.(Dist.Col.) Jun 28, 2007) (NO. 2006-1171), p.1368.; 고준성 외, “미국통상법 연구”, 법무부, 1996, p.393. 여기에서 최종판결의 의미는 CIT가 상무부나 USITC의 판정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최종판결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CIT가 상무부나 USITC의 판정을 환송시킨 경우, 동 법원의 판결은 양 기관이 당해 환송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중국적인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55) John a. Bourdeau, “The ALR databases are made current by the weekly addition of relevant ne cases”, *American Law Reports ALR Federal*, 2008, p. 31.

56) *ibid.*, p.32.

상무부 및 USITC의 최종판정에 대한 심사에 있어 CIT는 증거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⁵⁷⁾ 최종판정이 소송기록상에 실제적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는지 여부를 살핀다.⁵⁸⁾ 상무부와 USITC의 판정이 법령에 의거해야 하지만,⁵⁹⁾ CIT가 소송기록상의 실질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따르지 않았다고 인정하면 당해 판정은 불법으로 간주한다.⁶⁰⁾

CIT의 최종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연방항소순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⁶¹⁾ 연방항소순회법원은 CIT에서 항소된 다양한 제소원인의 사례들을 판결하며, 이러한 사례들은 미국관세 및 국경보호청과 미상무부, USITC의 판정에 대하여 CIT에 항소한 사례들이다.⁶²⁾ 연방항소순회법원은 28 U.S.C.A. 1295(a)(5)에 의거하여 CIT에서 항소된 사례들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⁶³⁾ CIT의 판정을 검토함에 있어 연방항소순회법원은 처음부터 재심을 하여야 하고,⁶⁴⁾ CIT에 의해 사용된 동일한 기준을 새롭게 적용해야 한다.⁶⁵⁾ 따라서 연방항소순회법원은 CIT판결이 설득력이 있는지를 보지만, 심사를 할 때 결과는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⁶⁶⁾

연방항소순회법원의 명백한 권한은 해당법원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례들을 심리하면서 명백해 지고 있으며, 사례들의 복잡성은 방대한 관세분류 및 환송사례, 무역구제조치 사례, 관할권 쟁점 사례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더해가고 있다.⁶⁷⁾ 연방항소순회법원은 해당수입에 있어 불공정 관행을 규제하는 법령의 관할권 조항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USITC의 사실적 판정을 심사함에 있어 실제적 증거 기준을 사용한다.⁶⁸⁾

반덤핑 사례는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유발하므로, 연방항소순회법원의 의견에 따라 CIT 및 상무부, USITC에 대하여 이후의 사례들에 영향을 주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또한 반덤핑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사례가 특정 사실상의 문제로 기인하는 것이므로, 거의 당사자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몇몇 사례에서 서비스거래에 통상법의 적용가능성과 같은 사안들도 발생한다.⁶⁹⁾ 이러한 판정들은 통상법

57) Bryan A. Edens, "Substantial Evidence in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Meaningful Judicial Review of Antidumping Actions or Perpetuation of the YO-YO Effect?", *Cardozo Public Law, Policy and Ethics Journal*, 6 *Cardozo Pub. L. Pol'y & Ethics J.* 431, Spring 2008, p.450.

58) 25 C.J.S. Customs Duties § 183.

59) 19 U.S.C. § 1516a(b)(1)(B)

60) 19 U.S.C. § 1516a(b)(1)(B)(i). "in an action brought under paragraph (2) of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to be unsupported by substantial evidence on the record, or otherwise not in accordance with law."

61) 28 U.S.C. § 1295(a)(5).

62) Munford Page Hall, II and Michael S. Lee, "A Review of Recent Decisions of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American University Law Review*, 57 *AMULR* 1145, April 2008, pp.1145-1146.; Terence P. Stewart and Elizabeth J. Drake, "Reliance on Decisions of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in Trade and Customs Litigation",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38 *GEOJIL* 177, Fall 2006, p.177.

63) 28 U.S.C. § 1295(a)(5);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shall have exclusive jurisdiction of an appeal from a final decision of the 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64) *Fag Kugelfischer Georg Schafer AG v. U.S.*, 332 F.3d 1370, (June 11, 2003.) p.1372.

65) *Yangcheng Baolong Biochemical Prods. Co. v. U.S.*, 337 F.3d 1332, (Aug. 4, 2003.) p.1333.; Terence P. Stewart and Elizabeth J. Drake, op. cit., p.184.

66) Bryan A. Edens, op. cit., p.431.; *Corus Staal BV v. Department of Commerce*, 395 F.3d 1343, (Jan. 21, 2005.) p.1346.

67) Munford Page Hall, II and Michael S. Lee, op. cit., p.1146.

68) 25 C.J.S. Customs Duties § 205.

의 일반적 구조에 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해당사안의 해결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입장변화로 인하여 장래의 통상사례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⁷⁰⁾

2. 미국반덤핑법의 적용

미국반덤핑법은 외국의 상품이 미국 내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거나 판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⁷¹⁾, 상품에 판매에 있어 외국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구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⁷²⁾ 또한 미국반덤핑관세의 부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i)상무부가 동종의 외국상품이 공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거나, 판매될 가능성을 판정, ii)USITC가 당해 상품의 수입 또는 수입을 위한 상품의 판매(또는 판매될 가능성)에 의해 미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위협에 처해 있거나 또는 미국산업의 형성이 실질적으로 저해된다고 판정할 경우,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⁷³⁾

이러한 반덤핑법의 적용은 상품의 판매에 있어 국가 간 가격차별을 규율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반덤핑법에서 “상품(*merchandise*)”이나 “판매(*sold*)”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⁷⁴⁾ 반덤핑법이 적용되는 상품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의료서비스나 법률서비스)와 같은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유형의 상품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다.⁷⁵⁾ 참고로 미 의회가 도하라운드에 미국대표로 참석할 협상가들을 위해 규정한 “서비스”의 정의를 살펴보면 “서비스”에서 제조과정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⁷⁶⁾

다음 장에서 살펴볼 사례는 미국내에서 반덤핑법이 제정된 이래 단 한 번도 제기되지 않았던 사안으로,⁷⁷⁾ 핵심 쟁점은 반덤핑법이 본안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즉, 반덤핑법은 상품의 불공정매매를

69) Munford Page Hall, II and Michael S. Lee, *op. cit.*, p.1146.

70) 미국은 법원이나 상무부, 및 USITC가 결정한 기존 판례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결정이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윤충원, 전계서, p.523.

71) 19 U.S.C. §1673(1).

72) 상품(*goods*) 혹은 제품(*merchandise*)의 판매는 반덤핑법에 의해 적용되지만, 서비스 조항은 동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Torrington Co. v. United States*, 68 F.3d 1347, (Fed.Cir. 1995) p.1352.에서 “반덤핑법에 근거한 목적은 외국 제조업자들이 자국의 국내시장보다 낮은 가격 즉, 공정가격 이하로 미국내에서 상품을 파는 것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라고 판정하고 있다.

73) 19 U.S.C. § 1673.

74) 19 U.S.C. § 1673(1). 및 19 U.S.C. § 1677.에서도 정의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서 물품이라 함은 대외무역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외무역법은 “물품”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증권 및 채권을 화체한 서류외의 동산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75) 19 U.S.C. § 2114b(5). the term “services” means economic activities whose outputs are other than tangible goods. Such term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banking, insurance, transportation, postal and delivery services, communications and data processing, retail and wholesale trade, advertising, accounting, construction, design and engineering, management consulting, real estate, professional services, entertainment, education, health care, and tourism.

76) 무역투자연구원, 전계서, p. 104.

77) Stuart M. Rosen and Gregory Husisian, *op. cit.*, p. 45.; *Eurodif S.A. v. United States*, 411 F. 3d 1355, 423 F. 3d 1275, 및 442 F. Supp. 2d 1367. 해당 사례들의 쟁점은 농축우라늄의 공급재료가 반덤핑법 19 U.S.C. § 1673에 의거할 수 있는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계약이 서비스인지 상품의 매매인지에 따라 반덤핑법의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반덤핑법 내에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상품(*merchandise*)’의 정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사전 등을 통해, 해당용어의 정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반덤핑법이 외국과 미국 사이의 상품(*merchandise*)의 불공정 매매에 적용이 된다면, 미국 내에서 “상품(*goods*)의 매매”에 적용되는 법은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이하 UCC)이다.⁷⁸⁾ UCC에서 다루는 상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상품은 매매를 위한 계약에 확인 시점에 이동가능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해당 용어는 장래의 상품, 특히 제조된 상품, 태내의 어린 동물, 성장 중인 농작물, 및 부동산에 첨부된 기타 확인되는 것을 포함한다. 하지만, 정보, 가격으로 지급되는 금전, 투자유가증권, 외국환거래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⁷⁹⁾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전적으로도 ‘상품(*goods*)’은 금전 이외에 유형 혹은 이동가능한 개인 재산으로, 상품의 매매는 UCC 제2장에 의해 규율된다고 정의하고 있다.⁸⁰⁾

한편, 반덤핑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상품(*merchandise*)”은 사전적으로, 매매에 관여된 이동 가능한 목적물로 구매나 판매에 의해 갑에서 을로 넘겨지는 것이며 특히, 상인에 의해 다루어지는 것으로 제품의 교환이나 물리적 이동에 의해 옮겨지는 교환의 목적물로, 종합적으로 상업적 상품, 제품, 및 무역의 대상을 일컫는다. 또한 해당 정의에서 부동산, 선적,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물 및 금전, 주식, 보증금, 어음 및 기타 실질 상품가치의 척도를 대표하는 것은 제외된다고 정의하고 있다.⁸¹⁾ 즉, UCC 상의 상품(*goods*)과 반덤핑법 상의 상품(*merchandise*)은 거의 동일한 용어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의 정의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반덤핑법에서 해당용어를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는 용어의 판단 기준을 살펴 볼 필요가 있게 된다. *Chevron U.S.A.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 사례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법률의 판단에 대한 기준을 정립했다.⁸²⁾ *Chevron*에 따르면, “해당사안에 있어 의회

유요한 청원인지에 대한 것이다. 즉, 후술하겠지만 저농축우라늄 관련계약이 서비스계약인지 혹은 상품계약인지 여부이다. 당해 쟁점이 중요한 이유는 반덤핑법령이 상품계약에만 적용되므로, 반덤핑법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78) UCC § 2-102. Scope; Certain Security and Other Transactions Excluded From This Article.

79) UCC § 2-103(1)(k); “Goods” means all things that are movable at the time of identification to a contract for sale. The term includes future goods, specially manufactured goods, the unborn young of animals, growing crops, and other identified things attached to realty as described in Section 2-107. The term does not include information, the money in which the price is to be paid, investment securities under Article 8, the subject matter of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or choses in action.

80) Black’s Law Dictionary (8th ed. 2004), “goods”

81) Black’s Law Dictionary (8th ed. 2004), “merchandise”

82) *Chevron U.S.A.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 467 U.S. 837 (1984). 이 사례의 쟁점은 연방환경청(Environment Protection Agency)이 정한 기준이 공장 전체에서 배출되는 공해물질의 총량만 넘지 않도록 기존 공장의 일부 시설만을 개조하는 것으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기청정법(Clean Air Act) 규정에 해석문제였다. 연방대법원은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하여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면 입법의도를 따라야 하지만(Step One), 법률에 규정이 없거나 있어도 모호한 경우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청의 결정이 합리적인지, 자의적이지 않은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Step Two). 그런데 행정기관은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규정제정의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의회가 이를 행정기관에 위임한 경우에는 그러한 위임입법이 자의적이거나 법률과 저촉되지 않는 한 합법적이라고 보며, 또한 의회가 위임한 것이 명시적이지 않을 때는 법원이 독자적인 해석을 내리기 보다는 행정청의 해석이 합리적인지 여부만 검토하면 된다고 하였다.

의 법령 입법의도가 명확하다면, 해당사안은 법령을 따라야 한다; 의회의 입법의도는 법원뿐만 아니라 상무부 및 USITC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⁸³⁾ 그러므로 *Chevron*에 의거하여 첫 번째 단계는 법원이 먼저, 해당사안에 대한 목적 및 의도가 사법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⁸⁴⁾ 만약 법원이 “법령이 특정사안과 관련하여 침묵하거나 모호한 것”을 발견한다면, 두 번째 단계로 법원은 상무부와 USITC의 관정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관정은 지지될 것이다.⁸⁵⁾

최근에도 *Nat'l Cable & Telecomms. Ass'n v. Brand X Internet Sevs.* 사례에서 법원은, 이전에 법원이 법령을 해석했다라도 모호한 법령에 대하여 행정기관들의 해석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⁸⁶⁾ 즉, 법령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해석에서 법령에서 명확하게 해석된 용어는 이전의 법원판결을 따르고, 모호하거나 침묵하고 있는 용어는 사건을 처음 판단하는 행정기관의 재량으로 남겨두는 것임을 강조했다.⁸⁷⁾ 이는 법령이 모호하거나 침묵하고 있는 경우에 법원보다는 행정기관이 해석하는 것이 어려운 정치적 선택을 적절히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⁸⁸⁾

또한 지금까지 연방항소소회법원은 “반덤핑법은 징벌적인 것이 아니라, 구제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구제법령은 광범위하게 해석되어 진다”고 판결해왔다.⁸⁹⁾ 반덤핑법의 목적은 외국수출업자와 덤핑영향을 받는 국내산업 간에 경쟁조건을 동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⁹⁰⁾ 의회는 반덤핑법의 목적이 피해가 되는 덤핑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⁹¹⁾ 특히 반덤핑법을 포함하고 있는 미국의 무역구제 법은 미국 국내제조업자에게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 거래된 수입을 가능한 한 방어를 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⁹²⁾

83) *Chevron* 467 U.S. 837 (1984). pp.842-43.

84) *Chevron* 467 U.S. 837 (1984). p.842.

85) *Chevron* 467 U.S. 837 (1984). p.843.; 반덤핑조사영역에서 상무부의 전문가 견해에, 법원은 모호성에 대한 해석을 존중해야 한다.

86) *Nat'l Cable & Telecomms. Ass'n v. Brand X Internet Sevs.* 545 U.S. 967, (2005), p.982.

87) *Nat'l Cable & Telecomms. Ass'n v. Brand X Internet Sevs.* 545 U.S. 967, (2005), p.980.

88) *Chevron* 467 U.S. 837 (1984). pp.865-866.; *Nat'l Cable & Telecomms. Ass'n* 545 U.S. 967, (2005), p.980.

89) *Bomont Indus. v. United States*, 13 C.I.T. 546, p.550., 718 F.Supp. 958,(1989) p.962.

90) *Huaiyin Foreign Trade Corp. v. United States*, 322 F.3d 1369, (Fed. Cir. 2003), p.1379.

91) S.Rep.No.249, 96th Cong., 1st Sess.37(1979), 1979 U.S.C.C.A.N.381, p.423.; *Lasko Metal Prods. v. United States*, 43 F.3d 1442, (Fed. Cir. 1994), p.1446.

92) Supreme Court of the Unites States, Nos. 07-1059, 07-1078(*United States of America v. Eurodif S.A.*), Mar 17, 2008, p.12.

III. Eurodif S.A. v. United States

이번 장에서 다루게 될 *Eurodif S.A. v. United States* 사례는 2000년부터 계속해서 논의되어 오고 있는 사건으로, 2008년 4월 21일, 미국연방대법원은 본안계약이 서비스계약이기 때문에 미국발전설비와 외국의 우라늄농축업자 간의 거래가 미국반덤핑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연방항소순회법원의 판결에 대한 심리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반덤핑 사례를 심사하는 것은 처음이다.⁹³⁾ 2008년 7월 현재 해당사건은 미국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2008년 10월 심리를 시작하여 2008년 말이나 적어도 2009년 초에는 최종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⁹⁴⁾

해당사례를 논의하는 실익은 연방대법원의 최종판결에 앞서 본 사례를 소개하고 현재까지의 당사자들의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최종판결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적용하는 미국반덤핑법에 있어, 정부당국인 상무부 및 USITC의 입장과 CIT 및 연방항소순회법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입장분석을 통하여, 행정부 및 사법부의 미국반덤핑법에 대한 판단기준을 아는데 있다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례구속의 원칙(*stare decisis*)을 따르고 있는 미국이 이후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불공정 무역관행에 있어서 반덤핑법의 적용 및 해석에 미치게 될 영향력까지 예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 쟁점사안

농축우라늄 공급재료⁹⁵⁾에 대한 당사자 간 계약이 반덤핑법 19 U.S.C. § 1673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이다. 상세히 말하자면, 우라늄농축공정은 발전회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을 생산하는 핵심과정이며 완제품 가격의 70% 정도를 차지하는데, 원자력발전회사는 우라늄농축업자들로부터 저농축우라늄(Low Enriched Uranium: 이하 “LEU”)생산을 위하여 두 가지 유형의 계약을 하고 있다: 첫 번째 계약은 발전시설이 농축업자들로부터 LEU를 가격에 따라 구매하는 농축된 우라늄제품(Enrich Uranium Product; 이하 “EUP”)에 대한 계약이다. 두 번째 계약은 “개별작업단위(Separate Work Unit: 이하 “SWU”)”의 구매를 공급하는 것으로, 농축 전 우라늄을 농축업자에게 건네고 농축에 대한 부가가치만큼만 지불한 후 농축된 완제품을 받는 것인데, SWU계약에서 구매된 정확한 LEU의 질량은 처음부터 기재되지 아니하고 단지 거래의 일반조건을 명기할 뿐이다.⁹⁶⁾ 즉 본안에서 쟁점사안은 SWU계약의 반

93) Sidley Austin LLP, “Supreme Court to Hear Antidumping Case”, International Trade Update, April 24, 2008, p.1.

94) *ibid.*, pp.1-2.

95) 저농축우라늄은 전력생산을 위한 원자력 반응에 이용되고 있는 원자력 연료봉을 생산하는 재료가 된다. 다시 말하자면, 농축은 우라늄에 포함된 핵분열 동위원소 U235의 함량을 증가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원자력 생성을 다음과 같다.
a. 우라늄 광석을 채굴. b. 우라늄 광석을 가루로 만들거나 정제하여 농축 우라늄 생성. c. 농축우라늄을 우라늄 육불화황으로 변형. d. 우라늄 육불화황을 LEU로 농축. e. LEU는 우라늄봉을 가공시키는데 사용된다.

96) *USEC v. U.S.* 259 F.Supp.2d 1310, CIT, 2003, pp.490-492.

덤핑 적용여부라고 할 것이다.

2. 사건개요

2000년 12월 7일, *USEC Inc.*와 동사의 완전자회사 *United States Enrichment Corporation*⁹⁷⁾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으로부터 LEU의 수입에 대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개시의 개시를 위하여 상무부에 신청을 했다.⁹⁸⁾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개시는 전체 LEU산업을 대표하는 USEC의 신청으로 개시되었다. 2001년 12월 21일, 상무부는 조사에 대한 최종판정을 했으며 판정은 다음의 두 가지 쟁점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⁹⁹⁾; 1) SWU계약이 서비스가 아니라 상품의 매매에 관한 계약이며, 그러므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을 따르는지 여부, 2) 국내설비 혹은 외국의 농축업자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사를 착수하기 위한 충분한 산업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LEU “생산자”인지 여부.

최종판정에서 상무부는 SWU계약은 상품의 매매에 관한 계약이라고 판정하였으며, 또한 국내설비가 아닌 외국농축업자들도 LEU의 “생산자”라고 판정했다. 이러한 판정의 근거로 상무부는 EUP계약과 SWU계약은 “그 효과 면에서 두 유형의 계약에 따르는 전반적인 합의 및 내용이 LEU의 구매 및 판매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고 최종긍정판정을 하였다.¹⁰⁰⁾

반면, CIT는 농축업자와 설비시설 간 SWU계약에 대한 상무부의 최종긍정판정은 실제적 증거에 의해 지지되지 아니하며, 반덤핑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다.¹⁰¹⁾ 또한 *Eurodif I*¹⁰²⁾ 및 *Eurodif II*¹⁰³⁾ 등의 판결에서 연방항소소회법원은 SWU계약이 상품의 매매계약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서비스계약이라고 보았으며, 이에 해당계약에 의거하여 생산된 LEU는 반덤핑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다.¹⁰⁴⁾

CIT 및 연방항소소회법원은 자신들의 판결근거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 의회에 의해 채택된 법령해석에 의거하여, 상품의 매매(*the sale of “goods” or “merchandise”*)는 반덤핑법에 의한 적용을 받지만 서비스조항은 반덤핑법에 의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SWU계약은 서비스조항을 포함하고 있

97) 이하 양자를 합하여 총체적으로 “USEC”라 칭함

98) *Low Enriched Uranium from France, Germany, the Netherlands, and the United Kingdom*, 66 Fed.Reg. 1080 (2001)(notice of antidumping investigation); *USEC v. U.S.* 259 F.Supp.2d 1310, CIT, 2003, p.490.

99) *LEU from France*, 66 Fed.Reg. at 65,877. *Low Enriched Uranium from France*, 66 Fed.Reg. 65,901 (Dep’t Commerce Dec. 21, 2001) (notice of final affirmative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 *Low Enriched Uranium from Germany, the Netherlands, and the United Kingdom*, 66 Fed.Reg. 65,903 (Dep’t Commerce Dec. 21, 2001)(notice of final affirmative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s).

100) “LEU from France”, 66 Fed.Reg. at 65,884-85

101) *USEC Inc. v. U.S.*, 259 F.Supp.2d 1310. (*USEC I*); *USEC Inc. v. U.S.* 281 F.Supp.2d 1334. (*USEC II*); *USEC II*에서 CIT는 SWU계약에 의거하여, 설비시설로 LEU를 이전하는 농축업자들은 반덤핑관세를 개시하기 위한 상품의 매매가 아니라고 보았으며, 일부확정 및 일부파기 판결을 내렸다.

102) *Eurodif S.A. v. U.S.*, 411 F.3d 1335. (*Eurodif I*)

103) *Eurodif S.A. v. U.S.*, 423 F.3d 1275. (*Eurodif II*)

104) *Eurodif I*, 411 F.3d 1335 p.1364.; *Eurodif II*, 423 F.3d 1275 p.1276.

으므로 반덤핑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보았다.¹⁰⁵⁾ 또한 이와 유사한 사안을 다루었던 사례에서 SWU계약과 계약분쟁해결법(Contract Disputes Act)에 대하여, 농축우라늄에 대한 SWU계약이 서비스계약이며, 그러므로 계약분쟁해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에 미국당국도 그러한 주장에 동의했다.¹⁰⁶⁾ 이러한 이유로 CIT 및 연방항소순회법원은 상무부의 최종행정판정을 기각하였다.¹⁰⁷⁾

판결에 의거하여 해당법원은 상무부의 판정에 대한 반송명령을 하였으나, 상무부는 SWU 농축계약에 의거한 저농축우라늄의 판매 및 구매가 미국반덤핑법 및 상계관세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CIT 및 연방항소순회법원은 상무부와 대립된 입장으로 해당계약이 명백히 서비스계약이므로 반덤핑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미국정부당국 및 USEC는 연방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현재 판결만을 앞두고 있다.

3. 하급심판결에 대한 당사자 입장

1) 항소인 - USEC 및 U.S.

미 의회는 상무부에게 불공정무역관행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무역구제적인 조치를 발하고 공정가격 이하의 판매에 대하여 최종행정판정을 함으로써, 미국 내 덤핑을 조사하고 반덤핑법을 운용할 권리를 위임하고 있다.¹⁰⁸⁾ 연방항소순회법원이 지금까지 인식해 온 것처럼, 반덤핑조사는 특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무부에서도 복잡하고도 복합적인 사안들로 구성된다.¹⁰⁹⁾ 그러므로 *Chevron* 사례에서 정립된 원칙과 같이 반덤핑 절차상 명백히 표명된 상무부의 해석 및 판정은 존중되어야 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¹¹⁰⁾

반덤핑법은 미국 내에서 불공정하게 판매되는 외국상품에 적용한다. 해당사례에서 실질적인 변형의 대가로 금전적 거래보다 원자재를 혼용한 거래가 19 U.S.C. § 1673(1)의 의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무부는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거래가 반덤핑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정하였다.¹¹¹⁾ 상무부가 판정한 바와 같이 우라늄농축은 주요한 제조과정으로 천연우라늄에 실질적인 가치를 더하고 변형을 일으키므로, SWU 계약을 근거로 한 농축은 순수한 의미의 “서비스”에 해당되지 아니한

105) *Eurodif I*, 411 F.3d 1335. p.1361.

106) *Fla. Power & Light Co. v. U.S.*, 307 F.3d 1364.

107) 해당사례의 간략한 연혁을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연방항소법원의 최종판결은 506 F.3d 1051에서 공표, 중간항소에 대한 연방항소법원의 입장은 411 F.3d 1355에서 공표되었고, 재심리에 대한 청원을 각하하는 해당명령은 423 F.3d 1275에서 공표. 중간항소에 대한 CIT의 의견은 281 F.Supp.2d 1334에서 공표되었고, 첫 반송명령은 259 F.Supp.2d 1310에서 공표. 프랑스 LEU에 대한 반덤핑조사의 최종판정을 공지하는 상무부의 통지는 66 Fed.Reg. 65.877에서 공표되었다.

108) 19 U.S.C. §§ 1673(1), 1673a(a)(1), 1673d(c)(2), 1673e(a)(1) and 1677(1).

109) *Pesquera Mares Australes Ltda. v. United States*, 266 F.3d 1372(2001), p.1379.

110) *Pesquera Mares Australes Ltda. v. United States*, 266 F.3d 1372(2001), p.1382.

111)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Nos. 07-1059, 07-1078(*United States of America v. Eurodif S.A.*)(2008 WL 74128), February 15, 2008, pp.17-18.

다.¹¹²⁾

반면, CIT 및 연방항소순회법원은 상품이 외국에서 제조되고 덤핑된 가격으로 미국에 판매되는 경우 미국 산업이 경쟁하는데 피해를 주지만, 외국의 생산자가 ‘상품’이 아닌 ‘서비스’만을 공급했기 때문에 반덤핑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해 오고 있다.¹¹³⁾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 생산자들의 활동은 명백하게, 전통적으로 정의된 용어로서 서비스(예-의료, 법률)라기 보다는 완제품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공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또한 연방항소순회법원은 단순히 당사자들의 계약상 구조만을 근거로 하여, 미국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덤핑된 상품을 수입하더라도 당사자들이 반덤핑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판결은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미국반덤핑법의 효과에 거대한 틈새를 제시한 것이다.¹¹⁴⁾

즉, 연방항소순회법원의 판결에 의거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의 외국 생산자는 프랑스 우라늄생산자에 의해 사용된 방법으로 단순히 계약을 구성함으로써 반덤핑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¹⁵⁾ 그러므로 USEC 및 미국정부당국은 연방항소순회법원이 *Chevron* 원칙에 의거하여 상무부의 해석을 존중하기 보다는 반덤핑법의 해석자체만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¹¹⁶⁾ 해당 입장은 상무부 및 USITC의 입장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2) 피항소인 - Eurodif. S.A.

CIT 및 연방항소순회법원은 반덤핑법이 명백하게 서비스의 판매가 아닌 상품의 매매에 적용되므로, 본안의 쟁점에서 해당계약은 서비스계약이므로 반덤핑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¹¹⁷⁾ 그러한 판결은 *Chevron* 테스트를 만족하는 것이다. 이는 해당사례의 경우 어디에서도 반덤핑법의 모호성을 찾을 수 없으므로, 연방항소순회법원은 반덤핑법의 명백한 의미를 사례에 적용한 것이다.¹¹⁸⁾ 즉, *Chevron* 원칙은 법령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명백하지 않으며 침묵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례에서 쟁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SWU계약은 서비스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상품의 매매에 적용되는 반덤핑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¹¹⁹⁾

뿐만 아니라 본안과 유사한 쟁점을 다루었던 *Florida Power* 사례에서, SWU계약은 상품이 아닌 서비스계약이라는 판결에 대하여 정부당국도 지지를 표명했다.¹²⁰⁾ 이에 해당연방항소순회법원은 SWU 거래

112) *ibid.* p.19.

113)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Nos. 07-1059, 07-1078(*United States of America v. Eurodif S.A.*)(2008 WL 74128), Mar 17, 2008, p.4.

114) *ibid.* p.4.

115) *ibid.* pp.5-6.

116) *ibid.* p.5.

117) *Eurodif II*, 423 F.3d 1275 p.1278.

118)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Nos. 07-1059, 07-1078(*United States of America v. Eurodif S.A.*), (2008WL 795140), March 21, 2008, p.15.

119)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Nos. 07-1059, 07-1078(*United States of America v. Eurodif S.A.*), (2008 WL 819272), March 21, 2008, pp.9-10.

가 서비스매매이며, 계약분쟁해결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¹²¹⁾ 또한 *Barseback* 사례에서도 SWU계약이 상품의 매매와 관련이 없으며, 해당계약은 우라늄농축 서비스를 위한 것이므로 UCC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다.¹²²⁾ 따라서 본안의 쟁점인 SWU 계약 또한 서비스매매에 관한 것이며, 그러므로 반덤핑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본다.¹²³⁾ 또한 해당 주장은 CIT 및 연방항소순회법원의 입장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4. 사례검토 및 함의

해당 사례가 의미가 있는 것은 첫째, 행정부와 사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 정부의 교역전문가들은 농축계약에 의거한 LEU의 판매 및 구매를 위한 SWU계약이 미국반덤핑법을 따른다고 반복적으로 판정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CIT 및 연방항소순회법원은 정부당국의 판정과 반대로 해당계약이 서비스계약을 구성하기 때문에 반덤핑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정하고 있다. 둘째, 해당분쟁이 일반적인 무역분쟁과 상이하기 때문인데 이는 분쟁의 사안이 반덤핑법에 의거해서는 단 한 번도 제기되지 않았던 것이며 연방대법원 또한 반덤핑 사례를 심리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이다.¹²⁴⁾

CIT 및 연방항소순회법원의 판결은 잠정적으로 불공정하게 수입된 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및 상쇄하기 위하여 미국반덤핑법에 의존하는 미국 산업 및 노동자들에게 폭넓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 즉, 판결에 따라 이후의 반덤핑 관련 사례들의 결정방향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해당 판정의 영향이 대부분의 무역분쟁에서 내포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을 훨씬 능가 한다는 것이다.¹²⁵⁾ 아직까지 연방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 판결이 어떠한 해당사례가 이후 반덤핑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크게 영향력을 미칠 것은 확실하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반덤핑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는 용어인 “상품(*merchandise*)”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법률용어의 해석상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반덤핑법의 입법의도는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명확하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상무부 및 USITC의 판정을 지지하게 된다면 반덤핑법의 적용대상은 더욱더 늘어 날 것이다. 다시 말해 계약상 서비스는 중요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제품공정 과정에 영향을 조금이라도 미치게 되거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본래의 서비스용어의 의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덤핑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반면 CIT 및

120) *Fla. Power & Light Co. v. U.S.*, 307 F.3d 1364, pp.1371-1374.

121) *Fla. Power & Light Co. v. U.S.*, 307 F.3d 1364, p.1372.

122) *Barseback Kraft AB v. U.S.* 36 Fed.Cl.691,705(1996), p.705.

123)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Nos. 07-1059, 07-1078(*United States of America v. Eurodif S.A.*), (2008WL 795140), March 21, 2008, p.17.

124) *Eurodif I*, 411 F.3d 1355 pp.1365-66.; 19 U.S.C. § 1673a(c)(4)(A); 19 C.F.R. § 351.401(h).

125)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Nos. 07-1059, 07-1078(*United States of America v. Eurodif S.A.*), (2008 WL 905193), April 2, 2008, p.1.

연방항소소회법원의 판결을 지지하게 된다면 계약조항을 근거로 반덤핑법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틈으로 인해, 외국수출업자들은 미국반덤핑법의 적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외국수출업자의 불공정무역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및 상쇄하기 위하여 반덤핑법을 이용하고 있는, 미국 국내산업에 잠정적으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품생산의 일부 또는 전체를 해외에 있는 자회사나 독립 계약자에게 아웃소싱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현 추세인데, 연방항소소회법원의 판결에 따르게 될 경우 반덤핑법규적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즉, 생산과정이 다수의 국가와 생산자에게 분산되는 현실에서 연방항소소회법원의 판결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다.¹²⁶⁾

따라서 연방대법원은 반덤핑법의 입법목적이 덤핑이라는 불공정행위를 상쇄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SWU 계약이 완제품에 대한 계약이 아닌 생산분할 계약이라고 하여 서비스라고 보는 연방항소소회법원의 입장과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의회의 입법의도를 감안하여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당해계약이 반덤핑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계약으로 판결될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 론

전 세계적으로 반덤핑법은 수입국에서 특정상품이 수출국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행위인 덤핑을 불공정 무역행위로 보고,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무역구제법의 하나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반덤핑 규제와 같은 통상정책의 영향력이 국제적이며,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고, 미국 내에서도 주요교역국들이 통상규제를 받는 경우가 높기 때문에 미국통상법의 연구가 필요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 체결을 앞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통상정책 중 우리나라에 가장 활발히 적용되는 것이 반덤핑 규제이다. 이러한 미국 반덤핑법의 입법의도는 피해가 되는 덤핑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덤핑에 덤핑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외국수출업자와 덤핑에 영향을 받는 국내산업 간에 경쟁조건을 동등하게 위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 반덤핑법은 그 역사적 발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호무역주의의 한 수단으로서 매우 복

126) 무역투자연구원, 전게서, pp.103-104. 예를 들어, 미국의 한 철강 유통업자가 A국에 위치한 생산자로부터 Wire rod를 수입하고, A국 생산자는 B국에 위치한 다른 생산자로부터 Billet을 수입하여 Wire rod를 가공하는 경우, Eurodif사태에서 연방항소소회법원의 판결을 적용하게 되면, 유통업자는 B국 생산자로부터 Billet을 구입하고 A국 생산자에게는 Billet을 Wire rod로 가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고, 이렇게 문서만 조금 변경하면 반덤핑 제재를 받지 않는 거래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시가 우리나라에 의미가 있는 것은 “10대 수출품목”중 하나인 철강의 경우,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 반덤핑의 규제가 가장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즉,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의 판결에 따라 기업들의 향후 대응방안이 달라지게 된다.

잡하고 방대하다. 이 자체를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미국 반덤핑법의 입법 주체 및 운영기관의 기본적 입장과 그 간의 사례를 살펴 볼 때 우리나라 기업에 대하여 덤핑제소만 있더라도 그 피해는 엄청나다. 또한 FTA를 기점으로 하여 양국의 교역이 증가하면 분쟁 또한 증가할 것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국가적 정책차원에서 한미 양국의 통상전문가의 지속적 배출, 무역구제제도의 적절한 활용과 무역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강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실무자의 무역구제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 대미 수출과 관련한 자료의 보존 및 수입업체와의 협력 강화 등과 같이 국가적 차원의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미 FTA의 경제적 효용 및 가치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경제적·물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정책적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 다루었던 사례는 반덤핑법의 적용여부라고 볼 수 있다. 즉, 상품의 매매에 적용을 하는 반덤핑법에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는 상품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Chevron* 원칙에 따라 법률해석은 먼저, 해당법률의 입법의도가 명백하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그 다음으로 법률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정부당국의 행정기관(해당사례의 경우에는 상무부 및 USITC)의 해석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CIT* 및 연방항소소회법원은 *Chevron* 원칙에 입각하여 사례를 본 것이 아니라, *SWU*계약과 관련한 사례를 적용하였다. *Fla. Power & Light Co. v. U.S.*에서 정부당국이 *SWU*계약이 서비스조항이므로 계약분쟁해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인용하였다.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반덤핑법의 입법의도가 외국수출업자의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명백하다. 물론, 반덤핑법이 상품의 매매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상품”의 용어정의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반덤핑법을 더욱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법률상 “서비스”를 정의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 이외의 것들을 상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입장이라면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아마도 상무부 및 USITC의 판정을 지지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Eurodif S.A. v. United States* 사례는 미국반덤핑법 역사상 단 한 번도 제기 되지 않았던 사안일 뿐만 아니라 연방대법원에서도 처음 다루는 사례이다. 그러므로 해당사례의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이후, 반덤핑법의 적용에 지대한 영향력을 줄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며 통상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반덤핑법의 확대 적용이나, 혹은 반덤핑법의 축소 적용이나 하는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반덤핑법의 운용에 있어 기본이 되는 “미국 반덤핑법 적용”에 대하여 절차적 및 실체적 요건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를 분석하여 미국반덤핑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향후 한·미 FTA 성립 이후 무역구제 분야 중 핵심인 반덤핑법 분야에 있어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고준성 외, 「미국통상법 연구」, 법무부, 1996.
- 김기영, “통상의 국내적 규제와 사법심사 -미국국제무역법원의 반덤핑관할권에 관한 관례의 태도와 관할권문제의 성격과 의의-” 「기업법연구」 제19권 제4호, 한국기업법학회, 2005.
- 무역투자연구원, 「각국 무역구제체도의 현재와 미래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산업자원부, 2007. 7.
- 유지열, 「미국의 반덤핑법과 실제」, 다산출판사, 2002.
- 유기석, “한국기업이 유념하여야 할 미국 반덤핑이슈에 대한 고찰”, 무역위원회, 2007. 4.
- 윤충원,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 집문당, 2006. 11.
- 지식경제부, “무역구제 포커스 제13호”, 2008.

◇ 외국문헌

- Bourdeau, John A., “The ALR databases are made current by the weekly addition of relevant ne cases”, *American Law Reports ALR Federal*, 2008.
- Committee on Ways and Means U.S. House of Representatives, “*OVERVIEW AND COMPILATION OF U.S. TRADE STATUTES Part II*”,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June 2005.
- DOC, *Antidumping Manual*, ITA, January 22, 1998.
- Edens, Bryan A., “Substantial Evidence in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Meaningful Judicial Review of Antidumping Actions or Perpetuation of the YO-YO Effect?”, *Cardozo Public Law, Policy and Ethics Journal*, 6 *Cardozo Pub. L. Pol’y & Ethics J.* 431, Spring 2008.
- Hall II, Munford Page and Lee, Michael S., “A Review of Recent Decisions of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American University Law Review*, 57 *AMULR* 1145, April 2008.
- Rosson, Parr and Adcock, Flynn, “A Primer on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Petitions”, *Center for North American Studies CNAS 2000-1*, January 2000.
- Restatement Third of the Foreign Relations Law of the United States § 806 cmt. a (1987).
- Rosen, Stuart M. and Husisian, Gregory, “Judicial Review by the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and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under 19 U.S.C. § 1581(C)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s issued by the Department of Commerce”,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38 *GEOJIL* 39, Fall 2006.
- Sidley Austin LLP, “*Supreme Court to Hear Antidumping Case*”, International Trade Update, April 24, 2008.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Nos. 07-1059, 07-1078(*United States of America v. Eurodif S.A.*) 2008.
Stewart, Terence P. and Drake, Elizabeth J., "Reliance on Decisions of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in Trade and Customs Litigation",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38 *GEOJIL* 177, Fall 2006.
USITC,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Handbook Publication 3916*,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April 2007.

◇ 관련사례

Cabot Corp. v. United States, 788 F.2d 1539, 4 Fed. Cir. (T)80, Appeal No. 86-729.
Chevron U.S.A.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 467 U.S. 837.
Eurodif S.A. v. United States, 411 F.3d 1355; 423 F.3d 1275; 259 F.Supp.2d 1310; 66 Fed.Reg. 65.877.
Fag Kugelfischer Georg Schafer AG v. U.S., 332 F.3d 1370.
Hyatt v. Dudas, 492 F.3d 1365, 1368, 83 U.S.P.Q.2d 1373, 1373 (Fed.Cir.(Dist.Col.) Jun 28, 2007).
McLean v. Department of Treasury, 2007 WL 4125032, *1 (Fed.Cir. Nov 05, 2007).
Nat'l Cable & Telecomms. Ass'n v. Brand X Internet Sevs. 545 U.S. 967.
Pesquera Mares Australes Ltda. v. United States, 266 F.3d 1372.
USEC Inc. v. U.S., 259 F.Supp.2d 1310. 281 F.Supp.2d 1334.
Yangcheng Baolong Biochemical Prods. Co. v. U.S., 337 F.3d 1332.

◇ 관련법령

UCC Section 2
19 C.F.R.
19 U.S.C.
28 U.S.C.

◇ 웹사이트

www.mke.go.kr, 03 Apr, 2008.
www.ktc.go.kr, 20 Feb, 2008.
www.kita.net, 11 Sep, 2008.
www.westlaw.com, 11 Apr, 2008.
www.usitc.gov, 07 May, 2008.
www.waysandmeans.house.gov, 12 Mar, 2008.
ia.ita.doc.gov, 10 Jun, 2008.